

보상계획 열람 공고

감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의 종류, 구조, 수량 등)에 대하여 의견 및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의 개요	사업의 위치	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외 8개리 일원										
	사업의 명칭	감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										
	사업의 규모	양수장 1개소, 집수암거 2개소, 저수지 1개소, 용수로 34조 34.10km, 송수관로 1조 1.5km, 진입도로 3조 0.7km.										
	사업시행기간	2017. 4. ~ 2023. 12. 31.										
	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	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보상업무수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보상사무실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어촌사업부(054-650-7142)										
2. 보상대상물건	예천군 감천면 대택리 산10, 산49-4, 산106, 369-1, 436-2, 933-1, 946-1, 예천군 감천면 마촌리 산74-1, 산76-2, 산119-2, 245, 248-2, 544-20,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산110,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 산38-2, 산38-3, 예천군 감천면 유리 산84-1, 산88-1, 산90-8, 산90-9, 산95-1, 609-10, 612-1, 660-1,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산29-1, 산46, 산79-1, 산79-2, 산80-1, 산80-2, 산80-3, 산105, 79-1, 91-2, 92-1, 657-9, 658-11, 659-5, 예천군 감천면 포리 산43-1, 산49-1, 산51, 산139-4, 143-1, 243-2, 606-2, 935-1 등 46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건											
3. 보상계획 열람	① 열 랐 장 소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어촌사업부,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②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: 2023.05.24. ~ 2023.06.07.											
4. 보상의 시기 · 방법 및 절차												
구분	일자	주 요 내 용										
감정평가 추천	2023.06.08부터 2023.07.07까지	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하고 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으로 감정평가), <u>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, 의견 등을 기재하여 보상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/u> - 사업시행자나 보상업무수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식 <table><tr><td>명 칭</td>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<td>사업장 소재지</td><td>연락처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명 칭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 소재지	연락처				
명 칭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 소재지	연락처									
보상액 산정 및 통보	2023.07.08이후	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] 제6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산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										
보상협의 및 계약체결	2023.07.08이후	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(협의 및 계약 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										
보상비지급 청구 및 지급방법	2023.07.08이후	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종료합니다.										

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2023. 05. 24.

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

